

# 1.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법률

법률 제5,586호 1998. 12. 28

##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1989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 바, 그 동안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,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, 또한 전국의 토지가격도 계속 하향·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동법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동법을 폐지하려는 것임.

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, 동조제3항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법인세·토지초과이득세”를 “법인세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③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·제5조제5호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④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중 “국토이용관리법·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·토지초과이득세법”을 “국토이용관리법”으로 한다.

주택회보